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 | | |
|------------|-------------------|----------------|---|
| 상담일시 | 2019. 7. 11. 9시 경 | 상담유형 |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 담 요청자 | 성명 안 | 생년월일 19 | |
| | 소속 (주소) 팀 | 연락처 064-7 - | |

상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사전신고 대상인지 문의

상담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답변에 따르면 아래와 같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 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 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 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위 공공기관의 소속기관도 포함되나, 산하기관 등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9년 7월 11일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김 미 정

(서명/도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 | | |
|-----------|--------------------|--------------|---|
| 상담일시 | 2019. 7. 30. 14시 경 | 상담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담 요청자 | 성명 고 팀 | 생년월일 19 | |
| | 소속 (주소) | 연락처 064-7 | |

상담 내용

- 회 제주지회 부회장이 인사 차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음료를 선물로 제공하였으나 당일 반환하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상담 결과

- 상담 요청자가 선물로 받은 음료가 총 3만 원 이하로 추정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액 범위 안의 금품등
- 또한 직무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임직원청렴행동 기본수칙에 따라 선물을 돌려주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019년 7월 30일

상담자

청탁방지 담당관 김 미 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 | | |
|-----------|-------------------|----------------|---|
| 상담일시 | 2019. 9. 20. 2시 경 | 상담유형 |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담 요청자 | 성명 고 | 생년월일 19 | |
| | 소속 (주소) 팀 | 연락처 064-7 - | |

상담 내용

- 외부기관에서 참석을 요청한 3일의 워크샵 중 외부강의는 하루만 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워크샵이 3일이라고는 하나 강의를 실시하는 하루에 대해서만 기재·신고하면 된다고 보여짐.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019년 9월 20일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김 미 정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